

의안번호	2212175
의 퇴 인	위성곤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A4431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의9 신설 (부당이득의 환수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¹⁾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(포상금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①제26조의10제1항 ²⁾ 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회수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, ②제26조의11 ³⁾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제72조제2항 신설 (벌금)	제26조의4 ⁴⁾ 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의무규정

- 1) 안 제26조의5(가맹점 등의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- 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
- 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
- 다.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(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,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)
4.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
- 2) 안 제26조의10(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) ① 판매대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3) 안 제26조의11(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.
- 4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(가맹점의 등록 등)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74조제1항제1호 삭제 (과태료)	“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* 안 제26조의9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중제재를 방지하려는 취지	의무규정
5	안 제74조제1항제1호의2·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2호 신설 (과태료)	①제26조의5제1항제3호 ⁵⁾ 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(제1항제1호의2), ②제26조의5제4항 ⁶⁾ 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(제1항제3호), ③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회수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(제1항제4호)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6조의5제1항제1호 ⁷⁾ 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제2항제2호)	의무규정

5) 안 제26조의5(가맹점 등의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

6) 안 제26조의5(가맹점 등의 준수사항)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7) 안 제26조의5(가맹점 등의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(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9 신설 (부당이득의 환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(포상금)	
3	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제72조제2항 신설 (벌금)	
4	안 제74조제1항제1호 삭제 (과태료)	
5	안 제74조제1항제1호의 2·제3호·제4호 및 제2 항제2호 신설 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판매, 환전 및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산금 징수 규정과 함께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,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
-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 - 재정지출의 증가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
 - 개정안은 제70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 외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회수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, ②온누리상품권 재판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
 - 재정수입의 감소는 기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발생
 - 개정안은 제7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폐지
 - * 안 제26조의9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중제재를 방지하려는 취지
 - 재정수입의 증가는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및 가산금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함에 따라 발생
 - 안 제26조의9는 부당이득 및 가산금 징수, 안 제72조제2항은 벌금형, 제74조제1항제1호의2·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2호는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산금,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 요인

구분	내용
재정지출 증가	· (제70조의2제1항제3호·제4호)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–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회수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를 신고한 사람(제3호) – 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(온누리상품권 재판매 금지 의무 등)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(제4호)
재정수입 (세외수입) 감소	· (제74조제1항제1호 삭제)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별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
재정수입 (세외수입) 증가	· (제26조의9)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 환수 · (제72조제2항)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· (제74조제1항제1호의2·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2호)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과 재정수입의 감소액을 합하여 총 재정부담을 산출한 뒤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포상금 지급 건수 및 액수, 부당이득 환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포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단가 등을 가정하여야 하나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의 경우 과거 제26조의5제1항제2호 위반에 따라 징수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액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나, 현재 가용 자료로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현황만 별도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부당이득 및 가산금, 벌금 및 과태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환수 금액,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2024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따른 고발 대상 개별가맹점(12개)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3,300만원이며, 해당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부당이득 추정치는 총 89억 6,200만원

[표]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고발(2024년) 대상 가맹점의 부당이득금 현황
(단위: 백만원)

연번	가맹점명	처분제목	과태료 부과액	부당이득금
1	000농산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2,276.8
2	00상회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3,690.6
3	00농산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731.1
4	00농산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747.6
5	00농산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650.8
6	000상회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266.5
7	00유통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82.8
8	000상회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87.8
9	00유통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139.5
10	00상사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113.0
11	00상회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2.5	79.6
12	000	과태료 처분 및 가맹취소	5.0	95.5
합계			32.5	8,961.6

주: 부당이득금 액수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산정한 추정치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산금 징수 규정과 함께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,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(순 재정부담)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